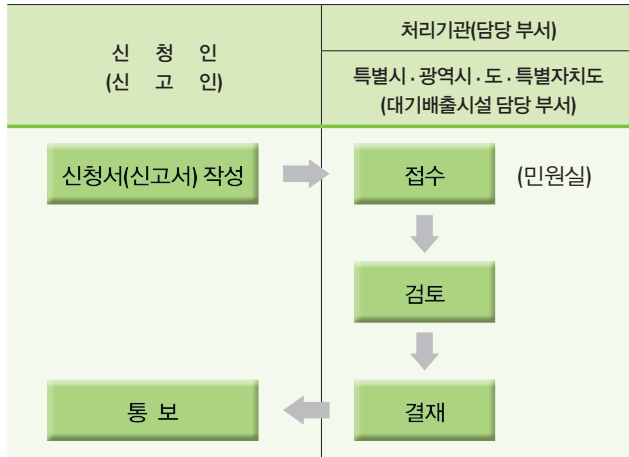




사업장의 신고절차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신고서) 작성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5조 서식 2에 따라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 업무처리 절차



※ 지자체별 관련 연락처

- 서울 : 기후대기과(02-2133-3611)
- 인천 : 대기보전과(032-440-3503)
- 경기 : 환경안전관리과(031-8008-3550)

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

- LNG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 구분 | 증발량 40톤/시 미만 (열량 2,476만Kcal/시 미만) | 증발량 40톤/시 이상 (열량 2,476만Kcal/시 이상) |
|-------------------|--------------------------------------|--------------------------------------|
| 2014.12.31 이전설치시설 | 150(4) ppm 이하 | 150(4) ppm 이하 |
| 2015.1.1 이후설치시설 | 60(4) ppm 이하 | 40(4) ppm 이하 |

※ 배출허용기준 난의)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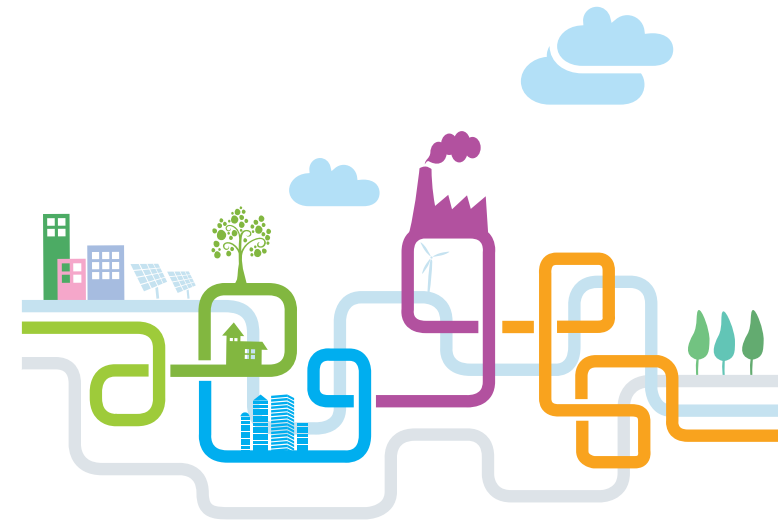
LNG보일러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총량제 대상 안내



문의사항

- 본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 | T. 044-201-6910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 T. 031-481-1392-4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 T. 032-590-360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LNG보일러의 대기배출시설 및 총량제 대상 안내



LNG 보일러도 대기배출시설 및 총량제로 관리

일정규모 이상의 LNG 보일러 시설이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 시설 및 총량대상으로 관리됩니다.

- 대기 배출시설중 보일러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시행규칙 5조 별표 3) 가)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

[산업 및 업무용 보일러 시설의 적용범위]

사업장내 부지내에서 후생복지(구내식당, 기숙사 난방, 목욕탕, 수영장등)에 해당 되는 일정규모 이상 보일러는 산업용에 포함되며, 업무용 보일러는 영업용(목욕탕, 대형상가 등)과 공공용 보일러를 말함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 이거나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를 말한다.

다) 가스(바이오가스 포함)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만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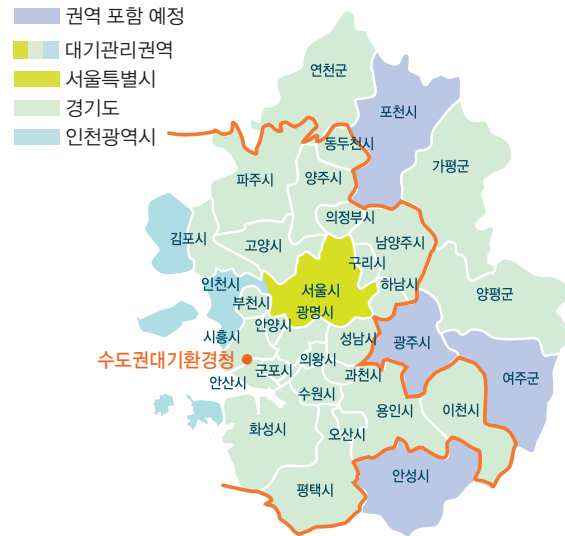
총량제 및 TMS(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은

- 총량제 대상은 [수도권특별법 시행령 별표1,2]

- 대기관리권역 내 연간 질소 또는 황산화물 배출량이 4톤을 초과하는 1종·2종사업장이 해당됩니다.

※ 현재 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24개시)

※ 확대 : 대기3중사업장 및 경기도 권역확대(광주, 안성, 여주, 포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완료 후 포함 예정



- TMS 부착 대상은 [수도권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의2]

- 액체 및 기체연료 사용하는 공통시설 중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이 해당됩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발생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최대 연료사용량

- LNG를 사용 보일러시설의 NOx 발생량 산정은 해당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예시한 방법대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LNG : 난방 3.70g/m³, 산업 3.70g/m³

[발생량 산정사례]

- 시간당 연료사용량 : 1,000Nm³/시
- 일 가동시간 : 20시간
- 연 가동일수 : 300일
- 오염물질발생량 합 : 22.44톤(2종 사업장)

- 질소산화물 연간발생량

= 3.7g/nm³ × 1,000nm³/시 × 20시 × 300일/년 × 10⁻⁶톤/g
= 22.20톤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는

-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 신고기간 : 2015.1.1~2015.12.31일까지(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 신고대상 : 일정규모이상의 산업 및 업무용 보일러(2015.1.1일 당시 배출 시설의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

• 신고기관 : 서울, 인천, 경기 등 지자체별 해당부서

※ 규모 미만 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동일 사업장에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총 규모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시간당 증발량이 1톤인 보일러 3대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